



가 정 통 신

교권 존중 학부모 연수 자료

2024학년도
웃터골제 14 호

☎ 14923 경기도 시흥시 은행고길 18 ☎(교무실)070-7096-7707 ☎(담당자)070-5092-4072

안녕하십니까? 항상 학부모님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교권 존중에 관한 내용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권 존중, 교권이 바로 설 때 학교교육이 살아납니다.

1 교권보호의 이해

근 거

- 『교육기본법』 제2장 제12조
-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2조 :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학생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할 때 그 권위를 존중 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제6조(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

● 교권에 대한 이해

- 교권(敎勸)** : 교사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 활동을 해나감에 있어서 전문성과 자율성을 존중받고 학생을 자유로이 가르치고 지도하는 권위를 인정받는다.
- 학생을 교육하는 교사는 교육할 권리를 갖으며 전문직 종사자로서 법률을 통하여 일정한 권리를 보장 받는다. 이는 통상 교사의 교육권 또는 수업권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교육과정 편성권, 교과서 작성권, 교재 채택 및 선정권, 교육내용 결정권, 교육방법 결정권, 평가권, 학생지도 및 징계권 등을 포함한다.
- 「헌법」 제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선언하고 있는바 교사 역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고 행복추구권을 향유할 수 있다.

나 교권침해란?

- '교권침해'란 교사의 교육할 권리와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권리,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에 대한 교육 행정기관, 학교행정가, 동료 교원, 학부모, 학생 등의 침해로 정의할 수 있다.
- 교원이 정상적인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학생·학부모·보호자 등에 의한 폭언·폭행·성희롱·명예훼손·협박·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인해 교육할 권리를 침해받는 것을 말한다.

● 교권 침해의 유형

학생에 의한 침해 유형	학부모에 의한 침해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권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시간에 소란스럽게 돌아다니는 행위 - 수업시간에 떠들거나 수군대는 행위 - 교사의 목소리, 행태 등에 빈정거리는 행위 - 수업과 관련 없는 질문으로 수업의 흐름을 방해하는 행위 - 비스듬히 앉아서 교사랑 눈싸움하는 행위 - 책, 노트 등을 준비하지 않고 빈 기방으로 등교하는 행위 ■ 교사에 대한 폭력, 성폭력이 우려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당한 지시에 대한 폭력 행사 - 여교사의 속치마 촬영, 강제로 어깨동무하는 경우 - 인터넷에 합성 음란물 사진 유포 - 학급 카톡에서 특정 교사를 놀리는 행위 ■ 교사의 지시 무력화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힘이 센 학생들이 사주하여 교사의 지시 거부, 인사 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의 인격권 침해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모가 교사에게 폭언하거나 폭행하는 경우 - 사이버상에 교사를 비방 행위(카톡, 밴드) - 사생활(이혼,이성문제 등)을 다른 학부모에게 유포 하는 행위 - 수업 형태, 생활지도를 비하하는 내용을 유포 - 전화, 이메일, SNS 등을 통한 폭언, 협박 등 ■ 교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무실, 교실에서 폭력, 재물을 파손하는 경우 - 시험 출제 경향의 요구, 수행평가 점수를 올려달라는 행위 등 - 생활기록부의 부당한 정정, 기록을 요구하는 경우 - 안전사고 피해 시 학부모의 부당한 협박이나 민원 제기 - 학교폭력 처리과정에서 교사에 대한 부당한 협박, 욕설

● 바람직한 학부모 학교 참여 방법

내 자녀만 미워한(불이익을 받는)다고 느끼는 경우	내 자녀가 부당한 체벌을 당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 자녀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 주변 친구들에 확인하는 등 객관적으로 이해 ■ 담당부장 및 교감(교장)과 상담 ■ 교육청 담당 장학사에게 도움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벌 증거 자료를 확보한 후 ■ 체벌 동기 및 정황을 확인 ■ 교감(교장)과 상담한 후에 조치 요구 ■ 학생인권옹호관 또는 지역교육청 담당 장학사에게 도움 요청

【학부모 학교 참여 십계명】

1. 학부모 학교 참여는 자녀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2. '내 아이'만을 위한 이기심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함께 잘 키우기 위한 마음으로 참여합니다.
3. 학교와 선생님을 존중하고, 협력하는 태도로 참여합니다.
4. 학부모의 권리와 함께 책임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합니다.
5. 학교와 학부모회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여합니다.
6. 학교와 적극적으로 소통합니다.
7. 가정에서의 학부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합니다.
8. 학교생활에 대해 평소에 자녀와 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9. 되도록 많은 학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합니다.
10. 학부모 교육 등에 지속적으로 참석하여 늘 배우는 자세로 참여합니다.

【학부모의 참여가 더욱 좋은 학교를 만듭니다.】

●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위한 교사와의 소통 강화

학부모 학교 참여는 자녀의 교육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자녀의 교육 및 생활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어려움이 있다면 학교에서 자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담임 선생님과 협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학생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학부모들이 학교 교육에 대해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부모 상담주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학부모는 학부모회 참여, 학교홈페이지 방문, 나이스 학부모서비스 자료 열람 등을 통해 학교 교육 과정 운영 및 자녀에 대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개수업에 참관하여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녀가 어떻게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으며 교사와의 소통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학부모 상담주간은 일정 기간을 정하여 학부모들이 학교에 방문하기 편한 시간에 담임교사와 약속을 정하여 자녀교육에 대하여 개별 면담 등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학교는 학기별 1회 이상, 1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학부모 상담주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방문 시 사전 예약하기】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안전과 교권보호를 위해 '학부모 상담주간 이외의 학교 방문' 시 학교 출입자의 신분확인 절차가 의무화되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

학부모님의 학교 방문도 사전 예약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상담 예약을 통해 상담의 질이 보다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교원은 학부모 등이 학교방문 신청 시 상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예약을 수락하도록 하며 학부모와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예) 전화, SMS, 이메일 등

【TIP : 담임선생님과의 상담(면담) 시 주의할 점】

- ☞ 사전에 정중하게 연락하여 상담을 위한 시간과 장소(교내)를 정합니다.
- ☞ 약속을 위하여 또는 상담을 위하여 전화를 할 경우 자녀의 시간표와 학사 일정을 참조하여 수업 시간 외의 시간에 전화를 합니다.
- ☞ 자녀가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다른 문제가 있을 때에는 바로 담임선생님께 알립니다.
- ☞ 면담을 연기하거나 취소해야 할 경우에도 반드시 미리 연락을 취하여 조정하도록 합니다.

2024년 3월 8일

웃 터 골 초 등 학 교 장